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보호직(육아휴직대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보호직(육아휴직대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남부지부장

1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koreha)에서 확인**

○ 공고문에 따라 **면접시험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 포기, 임용 포기 및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한(임용일로부터 1년) 내 중도 퇴사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2 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대상 : 경기남부지부 보호직(육아휴직대체직) 최종합격자 1명
나. 등록방법 : 방문 등록
다. 등록기간 :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7:00
라. 등록장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마. 증명사진(반명함 상반신 탈모) 1매
바. 통장사본 1부
사. 경력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면접시험 시 제출한 원본서류 제외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제외)

4 임용예정일

가. 임용예정일 : **2026. 10. 12.(월)**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등록기간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격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공단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공단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경우와 공고문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제출서류 보존 기관이 경과한 후 파기합니다.(제출처 : gg_south@koreha.or.kr)

○ 이의신청,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은 최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공단 경기남부지부 채용담당자(Tel : 031-232-50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